

의안번호	제 2008 - 5 호
의 결 연 월 일	2008. 4. 28. (제7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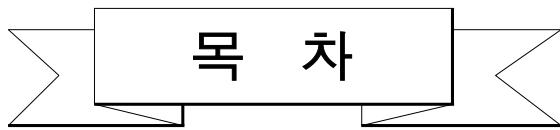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I. 팀별 회의	1
1. 총괄팀	1
2. 제1팀	2
3. 특별연구팀	5
II. 전체회의	12
1. 제1차 임시회의	12
2. 제7차 회의	13
III. 향후 일정	14

별첨 이호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손철우,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

이주형,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



I. 팀별 회의

1. 총괄팀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8. 3. 21.(금) 15:20 ~ 16:3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나. 참석자(5명)

- 전문위원 김소영, 김용철, 김현석, 조국(이상 가나다순, 이하 같음)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주요 안건

- 전문위원 연구 활성화

라. 회의 요지

- 양형위원회 제7차 회의에 대비한 연구 일정을 논의
 -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양형자료조사 분석결과를 전문위원 전원에게 전달하고, 양형인자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다면 4. 21.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양형인자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체회의를 통하여 SPSS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분석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양형자료 조사건수에 관하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짐
 - 4만 건 또는 7만 건까지 분석할 경우 통계적 의미와 소요되는 시간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7만 건까지 분석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이고, 전체 위원회 일정도 무한정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통계분석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2008. 4. 4. 16:00에 전문위원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전문위원 중 주요 연구 성과자에 대하여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회의 수당 외에 별도 항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2. 제1팀

가. 제7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8. 3. 21.(금) 17:00 ~ 18:3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2) 참석자(7명)

- 전문위원 김한균, 김현석, 서보학,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전문위원 제1팀 연구 일정

(4) 회의 요지

- 우리나라 양형현황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회 회의에서 전문가의 강의와 조언

을 듣기로 함

- 사기와 성폭력에 관한 통계분석자료 파일과 전체 통계분석자료 인쇄본을 신속하게 운영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숙지하고 차회 회의에 참석하기로 함

나. 제8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8. 3. 27.(목) 10:00 ~ 12: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7명)

- 전문위원 김한균, 김현석, 서보학,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
- 운영지원단장(간사)

(3) 회의 요지

- 운영지원단 선창민 통계실무관으로부터 'SPSS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음
 - 2007. 11. 19.부터 2007. 12. 31.까지 조사된 과거 확정사건 8,880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31개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빈도 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한 과정을 들음
 - SPSS 프로그램에 의한 분석결과를 이해하는 방법을 실제 분석결과를 기초로 설명 받음
- 무의미한 인자로서 입력과 분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인자를 정리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구간 설정을 큰 단위로 묶어 주는 재설정 작업을 해 보는 등 양형자료 조사 분석

틀을 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기로 함

다. 제9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8. 4. 11.(금) 16:00 ~ 23: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7명)

- 전문위원 김한균, 김현석, 서보학,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양형인자 정리를 통한 양형자료 분석틀 마련

(4) 회의 요지

- 전문위원 연구에 필요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통양형인자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정하는 논의를 진행함
- 공통양형인자 부분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사건 : 기소형태, 공소장 변경, 사건 병합은 분석에서 제외
 - 피고인 : 국적, 불법체류 여부, 피고인 가족 재산, 혼인시 연령, 가정불화(결손), 출생당시 생활여건, 형제관계, 부모의 동거 여부, 18세 이전 부모 동거 여부, 부모관계, 먼저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사망 시기, 사회생활 시작 시기, 교우 또는 이웃 관계, 최종 학력 · 학업 성적, 최종 학력 출결 사항 등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직업, 주거, 부양가족 등의 항목 또는 구

간을 재설정함

3. 특별연구팀

가. 제5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8. 3. 20.(목) 10:20 ~ 12:0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2) 참석자(4명)

- 전문위원 손철우,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

(3) 주요 안건

- 양형기준의 설정 원칙

(4) 회의 요지

- 양형기준의 설정 원칙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2008. 4. 28.로 예정된 양형위원회 제7차 회의에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주요 쟁점을 보고하고, 제8차 회의 때에는 각 전문위원이 연구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함

나. 제6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8. 4. 10.(목) 14:20 ~ 18:0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2) 참석자(4명)

- 전문위원 손철우,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

(3) 추가 보고서 제출 현황

주무전문위원	연구과제
이호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손철우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
이주형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연구

(4) 주요 안건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 정리

(5) 회의 요지

- 이호중 전문위원은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제의 기본적 틀과 구체적 쟁점을 제시1)

■ 양형기준제의 기본적인 틀

- 기본 쟁점
 - ① 망라적 vs. 개별적
 - 망라적 : 모든 범죄를 포괄하는 단일의 양형기준제 방식
 - 개별적 : 개별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제 방식
 - ② 격자형 vs. 점수제 vs. 서술식

1) 이하 주무전문위원의 보고서 요지는 특별연구팀 제6차 회의 이후 수정된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고, 주무전문위원이 제출한 요약 보고서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함

- 격자형은 '범죄전력'과 '범죄중대성 등급'을 양대 축으로 설정하여 각 셀(cell)별로 적정한 형량을 할당하고, 주요 양형인자를 계량화하여 범죄중대성 등급을 조정
- 점수제는 주요 양형인자를 점수화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구금형 여부 및 형량을 정함
- 서술형은 주요 양형인자의 적용기준을 서술식으로 제시하는 방식

○ 모델 분류

- ① 망라적 격자형 모델
- ② 개별적 격자형 모델
- ③ 개별적 서술형 모델
- ④ 개별적 점수제 모델

○ 새로운 제안 : 개별적 격자 · 서술형 모델

- 범죄유형별로 불법과 책임에 관련된 중요한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5~7등급 정도로 등급화
- 총칙상의 가중·감경사유에 대해서는 각 가중·감경사유 별로 가중·감경의 정도를 세분화하는 기준을 서술형으로 설정

■ 대상범죄의 설정

○ 쟁점 1 : 양형기준제 적용대상 범죄의 설정

<제1안> 모든 범죄에 적용

<제2안> 징역형(금고형 포함) 이상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범죄에 적용

<제3안> 합의부관할사건, 구공판사건 등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을 유형화

○ 쟁점 2 : 대상범죄의 우선적 설정

- ① 양형기준의 계량화와 세분화가 비교적 쉬운 범죄부터, ② 실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부터, ③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죄유형부터, ④ 양형편차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한 범죄유형부터

■ 부수 쟁점

○ 쟁점 1 : 기준형량의 결정방식

- 경험적 접근 vs. 규범적 접근

○ 쟁점 2 : 징역형과 벌금형의 관계 설정

<제1안> 각 구성요건 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 · 하한 범위에서 양자의 등가성을 인정

<제2안> 징역형을 기본적인 양형기준으로 보고, 벌금형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선택지로 활용

○ 쟁점 3 : 실형과 집행유예의 관계 설정

<제1안> 양형기준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2안>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에 상응하는 단기실형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그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 쟁점 4 : 집행유예의 부가제재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제1안> 집행유예 여부만 양형기준으로 포섭

<제2안> 집행유예 여부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시 부과되는 조건들을 유형화 · 등급화

- 손철우 전문위원은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의 기본 구조를 구분하고, 주요 쟁점을 제시

■ 양형기준의 기본 구조

- 제1모델 : 개별적 · 범죄유형화 모델
- 제2모델 : 개별적 · 계량화 모델
- 제3모델 : 망라적 · 범죄유형화 모델
- 제4모델 : 망라적 · 계량화 모델

■ 주요 쟁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망라적 양형기준 v. 개별적 양형기준
-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 방식
 - 범죄유형화 v. 개별 양형인자의 계량화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범위
 - ☞ 모든 범죄 v. 일부 범죄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선정 원칙
 - ☞ 양형기준의 목적, 범죄 빈도수 및 국민적 관심, 법 정형, 사물관할, 기소 형태, 선고형 등 상정 가능
 - 양형기준의 설정 순서
 - ☞ 동시 설정 v. 점진적 설정
- 양형기준 설정의 접근 방식
 - 기술적 접근방식 v. 규범적 접근방식
- 양형기준의 적용
 - 인적 범위(소년범, 외국인, 법인의 적용 문제)
 - 적용 시점(법정형 단계 v. 처단형 단계)

- 이주형 전문위원은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제 도입의 목적과 구체적 쟁점을 제시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의 의미

‘불공정한 양형편차’,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 ‘관대한 양형’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제

■ 양형기준제 도입의 목적

1. 불공정한 양형편차를 해소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양형 기준의 정립
3. 형벌의 확실성 및 엄정함의 보장 필요

■ 구체적 쟁점

1. 망라적 · 종합적 vs 개별적 · 점진적 양형기준제

- 망라적 · 종합적인 형태는 실형이 선고되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인원 분석 등 전반적 양형정책 수립이 가능한 형태

- 장점: 종합적인 양형정책 시행 가능,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교도소 인구의 증감 예측 가능,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 단점 :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기준의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

- 개별적 · 점진적인 형태는 개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여 1년에 한 두 개씩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형태

- 장점 : 사건 특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

- 단점 : ①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 마련 및 종합적 양형정책 수립이 어려움, ② 범죄 유형별 범죄의 중대성 판단 및 비교가 어려움, ③ 집행유예 선고 및 경합범 가중 기준 등에 대한 일관된 적용기준이 마련이 어려움, ④ 예측가능성 부재

2. 범죄수준 및 양형인자의 계량화 정도

- 기본범죄수준 세분화를 통해 양형인자별 등급조정이 가능한 형태
- 전과 외에 양형인자별 등급조정이 되지 않는 형태
- 일정한 양형인자의 존재에 대해 점수부여를 통해 계량화하는 형태
- 개별적 서술식 형태

3.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범죄발생빈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 종합적, 계량적 양형 기준 제정이 바람직
- 실형 선고를 통해 교도소 인구증감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빈발하는 범죄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빈발하지는 않으나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한 기준을 동시에 제정

4. 양형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재판에서의 양형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작업 필요

○ 종합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모든 사건의 판결 당시에 담당 법관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고려된 양형인자를 체크하고, 이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양형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이 타당

- 양형기준의 목적, 양형기준의 설정 원칙 등에 대하여는 양형 자료 조사 분석 결과를 기초로 추가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의견이 일치함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는 특별연구팀 제7차 회의 때 하기로 함

II. 전체 회의

1. 제1차 임시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8. 4. 4.(금) 16:00 ~ 18:2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나. 참석자(12명)

- 전문위원 김소영, 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박형관, 손철우, 이주형, 이호중, 조은경, 진선미, 최석윤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회의 요지

- 노성호 교수(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로부터 ‘양형통계분석’에

대한 강의를 들음

2. 제7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8. 4. 15.(화) 14:00 ~ 17:25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나. 참석자(12명)

- 전문위원 곽동우, 김소영, 김용철, 김현석, 박형관, 손철우, 이주형, 이호중, 이천현, 조국, 최석윤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주요 안건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

라. 회의 요지

- 제1팀(팀장 : 김현석 전문위원)에서는 제1팀 연구 경과 및 향후 연구 계획을 발표
- 특별연구팀(팀장 : 이호중 전문위원)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하여 특별연구팀에서 정리한 쟁점을 보고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양형위원회 심의 ·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함
- 외국 양형제도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됨

- 제6차 양형위원회에서 외국 양형제도에 대한 상세 보고 언급이 있었으므로 주무전문위원이 개별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형위원회에서 외국 양형제도에 대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 결정하였다면 전문위원 운영방침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고 양형위원회의 요구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개별 보고를 하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외국 양형기준제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하기로 함
- 제1팀 연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외부 전문가, 전문위원 등의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제1팀에서 일단 운영지원단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미흡한 경우 논의할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됨

마. 양형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심의 · 의결이 이루 어지기 전에 전문가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 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
- 외국 양형기준제에 대하여 보고가 필요한지 여부

III. 향후 일정

- 2008. 5. 16.경 : 전문위원 제8차 전체회의 개최
- 2008. 5. 20.경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

※ 다만 향후 일정은 특별연구팀 연구 진행 상황, 토론회 등 개최에
대한 위원회 결정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